

건 축 과

주 요 사 업

1. 민원편익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
2. 「한옥보급」 지원사업 운영
3. 건축물대장 생성·정리 및 표시변경 등기촉탁
4.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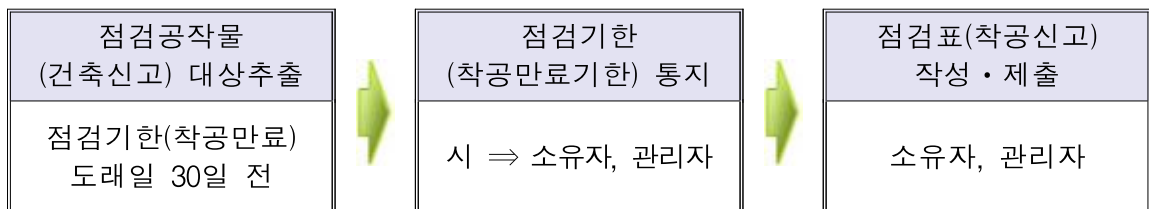
주요사업

1 민원편익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

- ◇ 건축법령에 따라 유지·관리되는 공작물 및 건축신고에 대한 사전예고 행정서비스로 불이익처분 민원 사전예방
- ◇ 건축물 철거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사후점검후 대장말소 행정서비스로 재산제부과 불이익 예방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소요예산 : 비예산사업
- 사업내용
 - 유지관리대상 공작물의 자체 안전점검 의무 기한전 사전예고
- 3년마다 유지관리 안전점검 미이행시 ⇒ 과태료 처분
※ 2018년 12월말 공작물 : 351건 (동194건, 읍면157건)
 -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착공기한 만료전 사전예고
-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착공시 ⇒ 건축신고 효력상실
 - 건축물 철거신고수리 후 대장말소 조치
- 건축물대장 말소 미이행시 ⇒ 재산세 부과



□ 기대효과

- 공작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주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만족 건축행정을 구현

② 「한옥보급」 지원사업 운영

- ◇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편리하고 경제적인 한옥보급으로 지역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
 - ◇ 전통한옥 기술 현대화를 통하여 전통 주거문화 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함
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소요예산 : 120백만원(도비 60백만원/시비 60백만원)
- 사업량 : 3동(바닥면적 60m² 이상)
- 지원대상 : 한옥건축계획서 접수일 이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단독주택 신축 시 대상
- 지원내용 : 동당 40백만원 (도비 20백만원/시비 20백만원)

□ 추진계획

- 한옥건립비 지원신청 : ' 19. 1~2월
- 대상자 선정통보 : ' 19. 3월
- 한옥건립 사업추진 : ' 19. 4월~12월
-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집행 : ' 19. 12월말

□ 기대효과

-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한 한옥보급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
- 전통 한옥 주거 문화 계승과 거주 문화 환경 조성

③ 건축물대장 생성·정리 및 등기촉탁

- ◇ 건축물대장 생성, 정리 및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비함으로써 건축물 대장의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 제고
- ◇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·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민서비스 제공

□ 건축물대장 등록 및 정비

- 기 간 : 2019. 1 ~ 12월
- 대 상 : 구미시 관내(동지역) 건축물대장
- 사 업 량 : 대장 생성 및 정리 1,500건, 대장정비 10,000건
- 내 용
 - 신축, 증축, 대수선, 용도변경, 표시변경·정정, 지번변경, 대장 분리·결합, 말소 등에 따른 대장 생성 및 정리
 - 기존 건축물대장 정비 및 소유자 정리
 - 폐쇄/말소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련 건축물현황도 정비

□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촉탁

- 기 간 : 2019. 1 ~ 12월
- 대 상
 -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변경
 - 건축물의 면적·구조·용도 및 층수 변경
 - 건축물의 철거·멸실 신고에 따라 철거·멸실한 경우
- 내 용
 -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지번변경, 표시 변경, 건축물 철거·멸실 신고한 경우는 세움터를 통한 전자촉탁 실시
 - 건축물 증축의 경우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 해당 등기소에 서면 촉탁 의뢰

□ 기대효과

-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적,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임

4]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

◇ 농촌지역의 노후·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

◇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등 건축물 철거 및 정비

□ 주택개량사업

- 대상지역 : 읍·면지역
- 사업량 : 23개동
- 용자대상자
 - 농촌지역에서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
 -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
 -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
- 용자조건 :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용자(최대2억원), 용자금리 2%
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- ※ 세제혜택 : 100m²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

□ 빈집정비사업

- 사업량 : 30개동
- 사업예산 : 24백만원(개소당 160만원 - 보조금 80, 자부담 80)
- 사업내용 :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 등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
- 지원내용 :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
- 추진일정
 - 대상자 공모 : '19. 1월
 - 대상자 선정 : '19. 2월
 - 사업추진 : '19. 3월~

□ 기대효과

-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
-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